2016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신청 안내

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신청사항을 안내합니다.

□ 재허가 대상

o 2016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 만료 지상파DMB 방송국

<재허가 대상 사업자 현황>

방송사업자	방송국	유효기간
 안동문화방송㈜	안동MBC 지상파DMB 방송국	2016. 12. 31.
(주)KNN	KNN 지상파DMB 방송국	2016. 12. 31.
 ㈜광주방송	KBC 지상파DMB 방송국	2016. 12. 31.
㈜대구방송	TBC 지상파DMB 방송국	2016. 12. 31.
 ㈜강원민방	G1 지상파DMB 방송국	2016. 12. 31.
 ㈜제주방송	JIBS 지상파DMB 방송국	2016. 12. 31.

□ 재허가 신청 서류 제출

o 제출기한 :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(2016. 6. 30.)

o 제출서류 : 신청공문, 재허가신청서, 첨부서류 등

o 제출처 : 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(중앙로) 정부과천청사 2동

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

o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

o 문의: 지역미디어정책과 재허가 담당(02-2110-1454, jessica@kcc.go.kr)

□ 심사위원회 구성

- o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
-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,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·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

<심사위원회 구성 방안>

구 분	분 야	비 고	
심사위원회 ⁻ (9인) _	심사위원장(1)	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	
	방송ㆍ미디어 분야(2)	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	
	법 률 분 야(1)	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	
	경제·경영·회계분야(2)	관련학과 교수, 회계사, 관련분야 종사자	
	기 술 분 야(1)	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	
	시청자·소비자분야(1)	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	
	방통위 사무조직(1)	담당 과장	

□ 심사항목 및 배점

o 방송법 제10조 제1항, 제17조 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등을 고려 하여 구성

<심사사항 및 배점>

심사사항	배 점
1.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	400점
2.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·사회·문화적 필요성	200점
3.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・편성・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	120점
4. 경영·재정·기술적 능력	180점
5.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	100점
계	1,000점

□ 재허가 여부 결정

- o 심사결과 총점 1,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'재허가'를 의결하고,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'조건부 재허가' 또는 '재허가 거부'를 의결
 -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·공익성 보장,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
- o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%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신청서 및 제출서류(서약서 등)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

□ 추진일정

o 2016년 6월말 : 재허가 신청서 접수

o 2016년 7월~11월 : 시청자 의견 접수, 기술심사 등

o 2016년 10월~11월 :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

o 2016년 11월 : 재허가 의결 및 심사결과 방송사업자 통보

※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유의사항

- o 재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(제출)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 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
- o 고의,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, 기타 중요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

- o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
 - 재허가 심사기간 중 법인 합병, 변경허가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보완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 야 함
- o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